

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견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등)제①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8월1일에서 9월1일로 한다.(제2조제2항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등) 제1항의 개정(2000. 7. 1)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8월 1일에서 9월 1일로 개정하는 것이며,
- 기존과 같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를 8월 1일에 집회할 경우 의회 운영에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적합성과 내용타당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지방자치법

제38조(정례회)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등)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.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<개정 2000·7·1>